

# 근로장려금 9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! (기한후 신청)



행복·희망의 길로 씩씩!!

## 신청요건은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~

- 신청기간 : 6. 3. ~ 9. 2. 까지
- 지급시기 : 심사를 거쳐 10월~11월 중 지급 예정
- 신청방법 : 주소지 세무서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), 인터넷(www.eitc.go.kr) 신청
- 문의처 : ☎ 국번없이 126번, 검색창

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가 신설되어 정기 신청기간(5월)에 신청 못하신 분도 9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함. 다만, 근로장려금은 90%만 지급

\*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정기 신청 기한을 9월 2일까지 일괄 연장(지급액 감액 없음)하였으며, 기한 후 신청기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.

#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?
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(보험설계사, 방문판매원에 한함)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1 (부양자녀 등 요건)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('95.1.2.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거나, 신청자가 60세 이상('53.12.31. 이전 출생)일 것
- 2 (총소득 요건)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

가구원 구성	기준금액	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
단독가구	1,300만원	70만원
홀벌이 가족가구	2,100만원	170만원
맞벌이 가족가구	2,500만원	210만원

\*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가구  
 \* 홀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
 \* 맞벌이 가구 :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
- 3 (주택, 재산 요건) 가구원 모두가 '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하며,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 
 \* 재산 : 주택, 토지와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회원권 등
- 4 (국적 등 요건) '13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, '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·주거)를 받지 않았어야 함

## ? 내년('15년)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?

### 자영업자도 전면 시행

내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(전문직 제외)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자녀장려금 도입

부양자녀(18세 미만)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.

###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가능

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☐ **내년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은 올해 소득이 있어야 지급되므로 회사에서 국세청에 급여(일당) 지급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**  
 \*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자가 소득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함

♣ **내년에도 꼭!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~**